



제428회 국회(임시회)
제2차 국토교통위원회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《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에 관한 사항 포함 》

■ 문진석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8891호)

2025. 8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박재유

목 차

I . 문진석의원 대표발의(제2208891호)	1
1. 제안경위	1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3. 검토의견	3
가.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에 관한 사항 포함 등 (안 제16조제6항 신설 등)	3

I. 문진석의원 대표발의(제2208891호)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문진석의원 등 10인

나. 발 의 일 : 2025. 3. 13.

다. 회 부 일 : 2025. 3. 14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개선, 면역력 증가 및 각종 성인병 예방 등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따라 서울시, 경기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공원이나 일상 생활권 주변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확대해나가고 있음.

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공원 등의 보행로는 대부분 아스팔트, 시멘트, 우레탄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황토길 등의 보행로가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 조성·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내 맨발 걷

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를 확충하고,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
것임(안 제16조제6항 신설).

3. 검토의견

가.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보행로에 관한 사항 포함 등(안 제16조 제6항 신설 등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4. “공원시설”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 가. ~ 라. (생략) 마. 테니스장, 수영장, <u>공도장</u> 등 운동시설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3. (생략) 4. ----- -----.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----- <u>공도장, 맨발 걷기길</u> 등-----
제16조(공원조성계획의 입안) ① ~ ⑤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6조(공원조성계획의 입안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공원조성계획에는 맨발 걷기 활성화</u> <u>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·확충</u> <u>및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</u> <u>야 한다.</u>

개정안은 도시공원 시설 중 운동시설의 예시에 맨발걷기길을 추가하고, 공원조성계획¹⁾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·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.

1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6조(공원조성계획의 입안)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(이하 “공원조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입안하여야 한다.

최근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²⁾를 시작으로 광역·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여 현재 174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, 일부 조례에서 도시공원에의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³⁾하고 있는 상황으로,

개정안과 같이 맨발걷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은 다수의 조례로 추진 중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시공원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확대하고,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로 보임.

한편, 현행법 제16조의2⁴⁾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은 도시·군관리계획으

2) 「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2023.3.7. 제정

3) 「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도시공원조성 등에서 보도계획 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총 보도의 최소 30%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맨발 보행로”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.

나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
제6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4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6조의2(공원조성계획의 결정)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·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·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.

④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8조(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)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 계획(이하 “공원조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

로 결정하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, 공원조성계획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원조성계획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6조의2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및 내용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임.

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으로 관련 개정안의 내용은 법 체계 상 필요시 법률보다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입장으로, 맨발걷기길의 경우 도시공원 조성의 필수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수항목으로 볼 수 없으며, 맨발걷기길은 도로의 일종인 보행로로서 도로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입장임.

참고로, 개정안과 관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.

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
2.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
3.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
 - 가.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
 - 나. 자연·인문·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
 - 다. 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
 - 라.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, 동선(動線), 공원시설의 배치, 범죄 예방, 상수도·하수도·쓰레기처리장·주차장 등의 기반시설,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
 - 마.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
 - 바. 공원조성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
 - 사.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
4.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·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

지방자치단체	의견
경기도	- 맨발 보행로 조성은 모든 공원 조성계획 시 의무화 적용은 타당하지 않음
강원특별자치도	-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, 현장여건, 공원 조성 목적에 따라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함이 타당함
경상북도	- 특정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모든 도시공원에 강제하는 내용을 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
서울특별시	- 맨발걷기는 운동종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도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- 도로의 포장형태에 따라 구분되는 시설로, 이를 위한 별도 규정시설은 타당하지 않음
인천광역시	- 맨발걷기길은 현재 도로로 관리되고 있으며, 운동시설로 규정될 경우 녹지 내 설치된 맨발산책로는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될 수 있어, 활성화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- 맨발걷기길은 공원의 이용 및 관리현황에 맞게 공원관리청에게 재량 부여 필요
전북특별자치도	- 법령체계와 황토길의 이용·유지·관리를 고려할 때 법령개정에 신중검토 필요
충청북도	- 공원의 입지·특성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맨발보행로 조성 필요

문 의 처

02)6788-5581